

부산광역시사하구행정기구설치조례안

의안번호	95-2
------	------

제출년월일 : 1995. 1. 13

제 출 자 : 사 하 구 청 장

1. 제안이유

94. 12. 20 개정된 지방자치법 제102조는 현재 자치구 규칙으로 관리하고 있는 행정기구설치조례로 정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0조에 따라 부산광역시사하구행정기구설치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임

2. 주요골자

- 구본청의 행정조직 : 2실 3국 17과(안 제3조 내지 제7조)
 - 실 : 기획감사실, 문화공보실
 - 국 : 총무국, 사회산업국, 도시국
 - 과 : 총무과, 재무과, 세무1과, 세무2과, 시민과, 민방위과, 사회과, 가정복지과, 환경보호과, 청소과, 위생과, 보건소, 지역경제과, 지역교통과, 도시개발과, 건축과, 건설과, 지적과
- 하부조직 : 실·과 밑에 계를 두고 설치와 분장사무는 규칙으로 따로 정한다(조례안 제8조)
- 사무분장 : 별첨 조례(안) 참조

3. 관계법령

- 지방자치법 제102조
-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0조 제3항

부산광역시사하구행정기구설치조례안

제 1 조(목적) 이 조례는 지방자치단체의행정기구와정원기준등에관한규정 제10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산광역시사하구(이하 “구”라 한다)에 두는 실·국 및 과 등 행정기구와 그 분장사무의 대강에 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 2 조(실·국의 설치) 구의 행정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기획감사실, 문화공보실, 총무국, 사회산업국, 도시국을 둔다.

제 3 조(기획감사실) 기획감사실의 분장사무는 다음 각호와 같다.

1. 구정의 종합 기획 조정
2. 기본운영 계획수립 및 조정통제
3. 기구·정원 및 사무분장
4. 예산편성 및 배정
5. 법제 및 소송에 관한 업무
6. 감사 및 공무원 비위조사 처리
7. 통계업무
8. 행정관리 개선
9. 지시사항 총괄
10. 구의회 관련업무 총괄
11. 환경순찰에 관한 사항
12. 국제협력 및 교류에 관한 사항
13. 공직자 윤리에 관한 사항
14. 그 밖의 다른 실·국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

제 4 조(문화공보실) 문화공보실의 분장사무는 다음 각호와 같다

1. 지역문화 예술진흥시책 수립
2. 향토문화 발굴 육성

3. 공보행정의 종합계획 및 조정
4. 국정·시정·구정시책 계몽선전 및 보도
5. 지방문화예술의 진흥
6. 출판사 및 인쇄소 등록
7. 사회단체 등록
8. 종교, 향교 및 사찰에 관한 사항
9. 문화재 보호관리

제 5 조(총무국) ① 총무과, 재무과, 세무1과, 세무2과, 시민과, 민방위과를 둔다.

② 총무과의 분장사무는 다음 각호와 같다.

1. 서무, 의전, 보안 및 청사관리
2. 공무원 인사, 후생복지 및 교육
3. 행정구역 조정·개편
4. 선거·국민투표
5. 행정전산화 추진 및 행정통신망 유지관리
6. 행정서사, 인장업에 관한 사항
7. 동행정 지도감독
8. 주민등록에 관한 사항
9. 새마을에 관한 사항
10. 직장예비군 및 직장민방위 운영
11. 시민 전진생활 육성, 지원에 관한 사항
12. 구유건물과 그 부대시설의 영선공사
13. 자연보호에 관한 종합계획 수립·조정
14. 자연보호에 관한 사항
15. 청소년 대책
16. 그 밖에 타 실·과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

③ 재무과의 분장사무는 다음 각호와 같다.

1. 구비, 시비, 국비 회계의 총괄
2. 지출원 업무
3. 물품의 조달, 출납, 보관
4. 국·공유재산 관리
5. 세입세출의 현금 및 유가증권의 출납 보관

④ 세무1과의 분장사무는 다음 각호와 같다.

1. 지방세 제도의 운영
2. 세무행정의 종합조정
3. 시세부과·징수에 관한 사항
4. 부동산 시가 조사 업무
5. 부동산 평가 업무
6. 시세수입 통계 및 결산
7. 지방세 체납액 정리에 관한 사항

⑤ 세무2과의 분장사무는 다음 각호와 같다.

1. 구세 부과·징수에 관한 사항
2. 지방세 체납액 정리에 관한 사항
3. 지방세 세원 조사
4. 세입에 관한 범칙사건 처리
5. 구세·세외수입 통계 및 결산
6. 자금운용과 배정

⑥ 시민과의 분장사무는 다음 각호와 같다.

1. 민원사무 처리 및 민원상담
2. 호적 및 국적에 관한 사항
3. 병무 및 향토예비군에 관한 사항
4. 문서 및 공인 관리
5. 민원사무제도 개선 연구

6. 민원1회 방문처리제에 관한 사항
7. 주민의 고충 상담
8. 어렵고 불우한 주민 상담 협조 업무처리
9. 구 산하기관 및 부서내 근무 공익근무요원 복무관리 총괄

⑦ 민방위과의 분장사무는 다음 각호와 같다.

1. 민방위 계획 수립 시행
2. 민방위대의 조직·편성 및 운영관리
3. 민방위 시설 및 장비의 관리
4. 비상대책 업무

제 6 조(사회산업국) ① 사회산업국에 사회과, 가정복지과, 환경보호과, 청소과, 위생과, 지역경제과를 둔다.

② 사회과의 분장사무는 다음 각호와 같다.

1. 구민복지시책의 종합계획 수립
2. 생활보호 및 구호
3. 노동단체 지도육성 및 직업보도
4. 의료보호 및 노사운영에 관한 사항
5. 사회복지시설 및 사회복지법인에 관한 업무(부녀아동관계 제외)
6. 자조근로사업 및 자활정착사업
7. 그 밖에 국내 다른 과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

③ 가정복지과의 분장사무는 다음 각호와 같다.

1. 가정복지 행정의 종합계획
2. 여성의 지위향상 및 생활개선
3. 부녀, 아동복지 법인 및 부녀아동 후생시설에 관한 업무
4. 여성단체 지도육성
5. 노인, 아동, 부녀자 복지 증진
6. 보장구 제조, 수리업의 행정처분

7. 기타 가정복지에 관한 사항

④ 환경보호과의 분장사무는 다음 각호와 같다.

1. 환경보전 종합계획 수립조정
2. 환경영향평가 및 환경분쟁 조정
3. 배출시설 설치 및 변경허가
4. 공해업소 지도감독 및 행정처분
5. 환경오염원 조사분석 및 오염도 측정
6. 환경감시 공익근무요원 관리에 관한 사항
7. 기타 환경보호와 관련된 사항

⑤ 청소과의 분장사무는 다음 각호와 같다.

1. 일반폐기물처리 종합계획 수립·조정
2. 오수, 분뇨 및 축산폐수처리 종합계획수립·조정
3. 일반폐기물처리에 관한 사항
4. 오수, 분뇨 및 축산폐수처리에 관한 사항
5. 쓰레기 감량, 자원재활용, 분리수거에 관한 사항
6. 청소장비 개선 및 보강
7. 기타 청소행정에 관한 사항

⑥ 위생과의 분장사무는 다음 각호와 같다.

1. 식품 및 공중위생의 종합조정
2. 정신위생 및 식생활 지도
3. 식품 및 공중위생의 지도감독
4. 위생업소 허가 및 위생검사
5. 부정업소 허가취소, 위생검사
6. 위생업소 종업원 보건관리
7. 공설공중탕 관리
8. 묘지, 화장장 관리

⑦ 지역경제과의 분장사무는 다음 각호와 같다.

1. 지역단위 경제발전 계획 수립
2. 상공업진흥계획 수립 실시
3. 중소기업 육성
4. 시장육성 및 관리
5. 연료수급 및 공산품 품질관리
6. 산업행정의 총괄
7. 농지보존 사업
8. 축산·잠업 장려 및 증산지도
9. 양곡 수급 조절
10. 산림보호 육성
11. 공원개발 관리
12. 공원녹지 감시 및 산림감시 공익근무요원 관리에 관한 사항

제 7 조(도시국) ① 도시국에 지역교통과, 도시개발과, 건축과, 건설과, 지적과를 둔다.

② 지역교통과의 분장사무는 다음 각호와 같다.

1. 교통·관광행정 종합계획 수립·조정
2. 교통유발부담금 부과·징수에 관한 사항
3. 주차장 정비계획 수립·조정
4. 주차시설 개발 및 관리
5. TSM 사업추진
6. 개인택시·개인용달 및 개별화물 운송 사업에 관한 사항
7. 불법 주·정차 단속에 관한 사항
8. 자동차 운송사업 등록 및 지도·감독
9. 자동차 점검 및 정비에 관한 사항
10. 자동차관리사업 허가 및 지도·감독
11. 자가용 자동차 불법행위 단속

12. 이륜자동차에 관한 사항
13. 창고업 인·허가 및 지도·단속
14. 자동차세 체납차량 번호표 영치 등 단속에 관한 사항
15. 주·정차 위반차량 과태료 부과 징수
16. 교통질서계도 공익근무요원 관리에 관한 사항
17. 그 밖의 국내 다른 과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

③ 도시개발과의 분장사무는 다음 각호와 같다.

1. 지역개발행정 종합계획 수립 시행
2. 국토와 자연자원의 보전이용 및 개발
3. 개발제한구역 관리
4. 도시정비 업무
5. 공유수면(불법매립포함)에 관한 사항
6. 광고물 등 관리에 관한 사항

④ 건축과의 분장사무는 다음 각호와 같다.

1. 건축행정 종합계획 수립 조정
2. 건축허가 및 시공감독
3. 무허가 건축물 단속
4. 건축물 상실 점검
5. 건축자재 생산업에 관한 사항
6. 건축업무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

⑤ 건설과의 분장사무는 다음 각호와 같다.

1. 건설행정의 종합조정
2. 토목건설사업계획의 수립시행
3. 자연재해 방재대책
4. 건설사업 보상업무
5. 하천 및 공유수면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

6. 상·하수행정에 관한 사항

7. 중기동원 업무

8. 기전설비 유지관리

⑥ 지적과의 분장사무는 다음 각호와 같다.

1. 택지취득허가 및 신고 수리

2. 택지소유상환 및 개발부담금에 관한 사항

3. 개별필지의 특성조사 및 지가산정

4. 부동산중개업에 관한 사항

5. 지적공부 유지관리

6. 지적측량

7. 지적측량 대행법인 지도·감독

8. 기타 택지 및 지가에 관한 사항

제 8 조(계의 설치 및 사무분장) ① 실·과 밑에 그 하부조직으로 계를 둔다.

② 계의 설치와 분장사무는 규칙으로 정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